

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('26.6.10.) 조치 의결

증권선물위원회(위원장: 권대영)는 6월 10일 제11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영풍, 고려아연(주) 및 (주)한결엘에스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 또한 (주)영풍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,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※ 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	책임자	팀 장	류성재 (02-2100-2690)
		담당자	사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		담당자	주무관	윤우진 (02-2100-2698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	책임자	국 장	이재훈 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 장	한도요 (02-3145-7730)
	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	책임자	국 장	문정호 (02-3145-7290)
		담당자	팀 장	이성진 (02-3145-7301)
<공동>	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	책임자	본부장	조점호 (02-3149-0353)
		담당자	팀 장	오윤주 (02-3149-0384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(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6.6.10. 의결)

[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영풍</p> <p>결산기 : 2021.12.31. 2022.12.31. 2023.12.31. 2024.12.31.</p> <p>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아연 연 제련 및 합금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토양정화총당부채 과소계상(제련소 주변지역) (연결·별도 '21년 52,178백만원, '22년 52,178백만원, '23년 33,240백만원, '24년 33,240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'21~'22년 총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, '23~'24년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총당부채를 산정하여 총당부채를 과소계상함</p> <p>② 토양정화총당부채 과소계상(주변 임야) (연결·별도 '23년 10,598백만원, '24년 10,527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제련소 주변 임야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'23~'24년 총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</p> <p>③ 토양정화총당부채 과소계상(제련소 하부) (연결·별도 '21년 90,519백만원, '22년 90,519백만원, '23년 77,906백만원, '24년 77,906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제련소 1·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 정화에 대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 총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함에도 총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</p> <p>④ 지하수정화총당부채 과소계상 (연결·별도 '23년 111,412백만원, '24년 111,412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'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제련소 오염 지하수에 대한 법적 정화의무가 존재하여, 향후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비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를 총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정화업체와의 실제 계약금액만을 총당부채로 과소계상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감사인지정 3년</p> <p>- 해임권고 상당 (前대표이사)</p> <p>- 해임(면직)권고 및 직무정지 6월 (담당임원, 前담당임원)</p> <p>- 시정요구</p>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	<p>⑤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(과대)계상 (연결·별도 '22년 34,790백만원, '23년 61,424백만원, '24년 △61,424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는 '22~'24년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손상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'22년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과거의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- '23년 자산손상 평가 시에는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	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[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영풍의 감사인 이촌회계법인</p> <p>결산기 : 2021.12.31. 2022.12.31.</p>	<p>【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토양정화총당부채(제련소 주변지역)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연결·별도 '21년 52,178백만원, '22년 52,178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토양정화총당부채(제련소 주변지역)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 <p>② 토양정화총당부채(제련소 하부)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연결·별도 '21년 90,519백만원, '22년 90,519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토양정화총당부채(제련소 하부)를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 <p>③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연결·별도 '22년 34,790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평가 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	<p>이촌회계법인 :</p> <p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</p> <p>- (주)영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</p> <p>공인회계사 2인 :</p> <p>- (주)영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6시간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[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영풍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</p> <p>결산기 : 2023.12.31. 2024.12.31.</p>	<p>【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토양정화총당부채(제련소 주변지역)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연결·별도 '23년 33,240백만원, '24년 33,240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토양정화총당부채(제련소 주변지역)를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 <p>② 토양정화총당부채(주변 임야)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연결·별도 '23년 10,598백만원, '24년 10,527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토양정화총당부채(주변 임야)를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 <p>③ 토양정화총당부채(제련소 하부)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연결·별도 '23년 77,906백만원, '24년 77,906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토양정화총당부채(제련소 하부)를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 <p>④ 지하수정화총당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연결·별도 '23년 111,412백만원, '24년 111,412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지하수정화총당부채를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 <p>⑤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연결·별도 '23년 61,424백만원, '24년 △61,424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평가 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소(과대)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	<p>대주회계법인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손해 배 상 공 동 기 금 추가적립 70%</p> <p>- (주)영풍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3년</p>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p>- 직무정지건의 1년</p> <p>- (주)영풍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4년</p> <p>- 주권상장·지정회사·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16시간</p>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p>- (주)영풍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</p> <p>- 주권상장·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8시간</p>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p>- (주)영풍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</p> <p>- 주권상장(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)·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6시간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[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고려아연(주)</p> <p>결산기 : 2022.12.31. 2023.12.31. 2024.12.31.</p> <p>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아연 연 제련 및 합금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과소계상 (연결 : '22년 21,228백만원, '23년 139,268백만원) (별도 : '23년 116,190백만원)</p> <p>-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투자의 공정가치 및 회수 가능액이 감소하였음에도 관련 평가손실 (손상차손)을 과소계상함</p> <p>②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미기재 (연결 : '22년 6,845백만원, '23년 6,920백만원)</p> <p>- 종속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식에 기재하지 않음</p> <p>③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(연결 : '22년 163,646백만원, '23년 166,500백만원, '24년 189,820백만원) (별도 : '22년 196,347백만원, '23년 △196,347백만원)</p> <p>-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권과 종속회사의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음</p> <p>④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</p> <p>- 투자자산 손실·손상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 사항이 발생</p> <p>⑤ 외부감사 방해</p> <p>-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방해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감사인지정 3년</p> <p>- 담당임원 해임(면직) 권고 및 직무정지 6월</p> <p>- 시정요구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)

[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한결엘에스</p> <p>결산기 : 2023.3.31. 2024.3.31.</p> <p>비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육류도매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재고자산 허위계상 (’22년 6,090백만원, ’23년 14,895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부산물을 정상제품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물량과 단가를 과대계상하고, 제품의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재고수불부를 조작하여,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함</p> <p>②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(’23년 3,230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 시, 순실현가능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하고, 이를 가공비가 제외된 원재료 장부가액과 비교함으로써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</p> <p>- 면직권고 상당 (前재무담당임원)</p> <p>- 검찰통보 (회사, 前대표이사 및 前재무담당임원)</p>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